

코로나 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

1.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처리 등	인정점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격리통지를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	가족동거인이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	[유의사항]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. 1)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(PCR검사) 결과가 음성인 경우, 2) 격리통지를 받은 '즉시'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○ 별도 시험실 제공		
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	[유의사항] - 다만, 선제검사(병원·항공 등 직업특성, 대회참여, 이동검체검사 등)의 경우 적용 제외		
코로나 19 의심증상 학생* (의심증상 발현학생)	증상 발현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
* 임상증상자^①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,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

(1) 선별진료소의 검사(진료) 결과와 (2)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(진단서)^②를 확인^③ 후 등교 허용 가능

① 기저질환자가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

②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,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

③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,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·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,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후 가정에 안내

※ 등교 후 유증상학생은 별도의 관찰실에서 증상 관찰 후 응시 여부를 판단(반드시 학부모 확인 필요)

2. 기타 사유 결석 학생의 인정점 부여

대상	조건	출결처리 등	인정점
고위험군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100%
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관심', '주의'	○질병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80%
기타결석 (감염 우려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기타 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80%
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미인정 결석	최하점의 차하점

※ 정기고사 기간과 고사 후 일주일은 교외체험학습을 원칙적으로 금한다.

3. 코로나 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가이드라인

대상	출결처리	출결 증빙자료	인정점
접종일	○출석인정결석	예방접종내역 확인서, 예방접종 증명서	기준점수의 100%
접종 후 1 ~ 2일	○출석인정결석	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, 학부모 의견서, 담임교사 확인서 등	기준점수의 100%
접종 후 3일 ~	○질병결석	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소견서, 진료확인서,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등)	기준점수의 80%

4.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

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

$$\text{최종 인정점} = \text{기준점수} \times \frac{\text{결시고사 평균}}{\text{기준고사 평균}} \times \text{인정점 부여비율}$$

과목	기준고사(1차고사)		결시고사(2차고사)	최종 인정점
	평균	기준점수	평균	
수학	68.0	65	62.3	47.64

*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

- 1) 68.0 : 65 = 62.3 : 인정기준점수
- 2) 인정기준점수 = (65×62.3) / 68 = 59.55
- 3) 인정기준점수 × 0.8(병결 인정점 부여비율) = 47.64
- 4) 최종 인정점 = 47.64